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정	2011. 3. 1.	개정	2015. 3. 1.	개정	2019. 1. 21.	개정	2022. 5. 1.
개정	2011. 8. 1.		2015. 9. 1.		2019. 3. 1.		2022. 10. 1.
	2012. 3. 1.		2016. 1. 1.		2019. 6. 1.		2023. 3. 1.
	2012. 9. 1.		2016. 3. 1.		2019. 8. 1.		2023. 6. 1.
	2013. 1. 1.		2016. 12. 1.		2019. 11. 1.		2023. 7. 1.
	2013. 9. 1.		2017. 3. 1.		2020. 1. 1.		2023. 12. 1.
	2013. 11. 5.		2017. 9. 1.		2020. 3. 1.		
	2014. 2. 1.		2018. 1. 25.		2020. 9. 1.		
	2014. 3. 1.		2018. 9. 1.		2021. 4. 1.		
	2014. 11. 5.	전문개정	2019. 1. 1.		2021. 7.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와 본교 학칙 제2조의2, 대학원 학칙 제4조의2(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채용조건형),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재교육형)으로 본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학부(전공)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을 포함하여 말한다.(개정 2023. 7. 1)

② “모체학과”라 함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며, 정원 내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를 모체학과로 지정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7. 1)

제 3 조(계약주체의 범위) ①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체(개정 2023. 7. 1)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②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재교육형의 권역은 지리적으로 소속된 광역행정구역(도 단위)으로 수도권 내 또는 본교와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

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보며, 채용조건형은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개정 2023. 7. 1, 23.12. 1)

③ 본교와 산업체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신설 2023. 7. 1)

제 4 조(명칭 및 입학정원) ① 계약학과의 명칭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7. 1)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분야에 한해 채용을 조건으로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계약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 7. 1)

제 5 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 2 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 6 조(설치 및 설치 운영기간) ① 계약학과는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다.

② 계약학과의 설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한다.

③ 계약학과 설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본교 수업연한에 따라 정하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그 기간을 명시한다.

제 7 조(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운영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산업체와 학생의 부담비율은 계약으로 정한다.

③ 산업체 등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물부담 비율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 8 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산업체 등과 학생에게 각각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 등과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하며, 해당 기간 내에 산업체 등 또는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계약학과 폐지 등)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 종료 또는 폐지 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경비를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10 조(퇴직 등) ①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②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

제 3 장 학 사 운 영

제 11 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상(입학일 기준) 재직한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개정 2023. 7. 1, 23.12. 1)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본교 입학전형에 따른다.(신설 2020. 1. 1)

제 12 조(학생의 선발) ① 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은 특별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요강에 따른다.

② 총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③ 본교 계약학과의 직전학기 제적생은 제적된 학기로부터 1개 학기가 경과한 이후에 신·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제 13 조(학기)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하며,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② 계절학기의 개설기간은 8주 이내로 하며, 직전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 및 제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학과 특성에 맞도록 편성·운영한다.

②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년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제 16 조(혼합형 교육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 산업체 등이 채용을 확정한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7 조(수업) ①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출석수업의 비중은 100분의 50 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 7. 1)

② 수업은 대학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시설(소유 또는 임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으나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7. 1)

제 18 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해당 계약학과에서 지정하는 편성표에 따라 일괄 등록하며, 복학 또는 9차 이상 등록 등으로 인한 개별 수강자의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 상 본인의 수강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강과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과목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9 조(성적) ① 학사학위과정의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등은 예외로 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A등급이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적평가 방법은 시험성적(중간시험, 기말시험 등) 60%, 과제물·출석 등 40%의 비율로 평가하여 다음 표에 따라 등급으로 산출하되, 백분율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이한다.

등 급	평 점	환산점수	분포비율
A+	4.5	95 ~ 100	40% 이하
A^0	4.0	90 ~ 94	
B+	3.5	85 ~ 89	80% 이하
B^0	3.0	80 ~ 84	
C+	2.5	75 ~ 79	20% 이상
C^0	2.0	70 ~ 74	
D+	1.5	65 ~ 69	
D^0	1.0	60 ~ 64	
F	0	0 ~ 59	

제 20 조(학점인정의 특례) ① 계약학과 학생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

② 학점인정의 세부사항은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학점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전 산업체경력 자료를 토대로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1 조(학업상황 통보) 매 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한다.

제 22 조(산업체 재직 확인) ①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 학기 개시 전월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하여 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직 여부는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3 조(졸업학점 및 학위수여) ① 학칙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각 학위과정별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전공 48학점/교양 15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7. 1)

④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의 설치 운영 기간 동안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는 한 학기에 한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⑤ 계약학과 졸업요건 중 졸업논문(졸업작품) 및 시험은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0. 1. 1)

제 24 조(학사 적용) ①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군입대, 출산, 입원(4주 이상)으로 인한 경우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예외 사유에 의하여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체장의 교육지원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허가한 경우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 25 조(대학원생 학사운영) 대학원생의 수강신청, 성적, 졸업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계약학과 현장실습(Internship) (신설 2020. 1. 1)

제 26 조(편성 및 학점)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 시행한다.

① 교과목 편성 및 구분

구분	교과목명(영문)	학점	실습시간	적용
ACT현장실습	현장실습 A1~A15 (Internship A1~A15)	3학점	70시간 이상	학기중/방학중

※ ACT현장실습(Agreement Contract Training) 채용조건형 적용

② 교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하고 학수번호는 공통으로 부여한다.

③ ACT현장실습은 실습기관에서 교육형 프로그램 또는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과정이다.

④ 졸업예정자의 계절제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현장실습운영원칙)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 실습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다만,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일부 제외될 수 있다.

1. 현장실습 수업계획서
2. 수강신청 계획
3.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지도 계획
4.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
5. 평가방식, 학점부여 근거 및 기준

④ 지도교수는 해당학과(부) 교원 또는 산학협약업체 소속교원으로 한다.

⑤ 강의료는 학점기준으로 지급한다.(신설 2023. 3. 1)

제 28 조(현장실습 신청 및 절차) ① 현장실습의 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ACT현장실습과정은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계약학과 입학한 학생은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다.
2.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맺은 각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② 현장실습 신청 및 선발은 전산시스템 또는 문서로 진행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 기관은 실습생 요청, 운영계획서를 등록·제출한다.
2. 현장실습 기관 및 운영계획서 확인 후 참여를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이 없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참여할 수 없다.
3. 학생은 공지된 일정에 따라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 현장실습 참여를 승인한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 참여확정자에 한하여 산업교육지원과에서 일괄 수강신청 처리한다.

제 29 조(실습지원비) ①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실습 장려를 위해 학교와 산학협력업체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업체는 실무형 프로그램 현장실습으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을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30 조(학점인정) ① 실습종료 후 3일 이내 실습기관의 담당지도교수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산업체설문조사를 마친 후 산업교육지원과 담당자에게 제출 통보한다.

② 실습기관 담당지도교수는 평가 후 7일 이내 제반보고서 및 현장실습 평가서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평가 후 산업교육지원과 담당자에게 제출 통보한다.

③ 산업교육지원과는 해당 학기 최종평가 종료 후 자료를 취합하여 교무과로 해

당학기의 성적으로 일괄 반영 요청을 한다.

④ 성적은 P/NP 로 처리하고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학점은 부여한다.

제 31 조(현장실습협약 및 기간) ①현장실습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기관, 실습생, 학교가 상호 협약하여야 한다.

② ACT현장실습 과정은 학기/방학 중 70시간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 32 조(현장실습생의 의무와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현장실습 기간 동안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 주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5. 현장실습 도중 문제가 발생 하였을 경우 지도교수 또는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장 받는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 33 조(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현장실습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단,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4 조(의무위반자 조치) 현장실습 도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현장실습을 중단하거나 학점인정의 취소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무단결석 등 현장실습생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현장실습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2.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3. 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고의적인 교육환경 저해나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 35 조(적용) 현장실습수업은 「고등교육법」 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 「대학생 현

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교육부고시)」에 따라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한다. (개정 2023. 7. 1)

(조 개정 2023. 7. 1)

제 5 장 계약학과운영위원회 (개정 2020. 1. 1)

제 36 조(설치)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사학위과정을 관장하는 대학계약학과운영위원회(이하 “대학위원회”라 한다),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관장하는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

(조 개정 2020. 1. 1)

제 37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② 대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 3. 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1. 4. 1)

(조 개정 2020. 1. 1)

제 38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조 개정 2020. 1. 1)

제 39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체 등과의 계약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운영경비의 부담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학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 개정 2020. 1. 1)

제 40 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 개정 2020. 1. 1)

제 41 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비치한다.

(조 개정 2020. 1. 1)

제 6 장 보 칙 (개정 2020. 1. 1)

제 42 조(특약사항)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산업체 등과의 개별적인 특약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조 개정 2020. 1. 1)

제 43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학칙 및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조 개정 2020. 1. 1)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계약학과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 1.21, 19. 6. 1, 19. 8. 1, 19.11. 1, 20. 3. 1, 20. 9. 1, 21. 4. 1, 21. 7. 1, 22. 5. 1, 22.10. 1, 23. 3. 1, 23. 6. 1)

계약학과의 명칭 및 입학정원

1. 대학(개정 2019. 1.21, 19. 8. 1, 19.11. 1, 20. 3. 1, 20. 9. 1, 21. 4. 1, 21. 7. 1, 22. 5. 1, 23. 3. 1, 23. 6. 1)

연도	단과대학명	학 과 명	형 태	학위명	입학구분	설치·운영기간	정원
2020	사회과학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20.3.1~2024.2.29	50
					편입	2020.3.1~2022.2.28	50
	미용예술대학 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20.3.1~2024.2.29	50
					편입	2020.3.1~2022.2.28	50
	미용예술대학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채용조건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20.3.1~2024.2.29	90
	소 계						290
2021	사회과학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21.3.1~2025.2.28	30
					편입	2021.3.1~2023.2.28	30
	미용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21.3.1~2025.2.28	30
					편입	2021.3.1~2023.2.28	30
	미용예술대학	헤어디자인학과	채용조건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21.3.1~2025.2.28	112
	소 계						232
2022	사회과학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22.3.1~2026.2.28	30
					편입	2022.3.1~2024.2.29	30
	미용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22.3.1~2026.2.28	30
					편입	2022.3.1~2024.2.29	30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채용조건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22.3.1~2026.2.28	80
	미용예술대학	헤어디자인학과	채용조건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22.3.1~2026.2.28	132
	소 계						332
2023	인문사회과학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23.3.1~2027.2.28	30
					편입	2023.3.1~2025.2.28	20
	미용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23.3.1~2027.2.28	100
					편입	2023.3.1~2025.2.28	100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채용조건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23.3.1~2027.2.28	25
	미용예술대학	헤어디자인학과	채용조건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23.3.1~2027.2.28	225
	소 계						500
2024	인문사회과학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24.3.1~2028.2.29	30
					편입	2024.3.1~2026.2.28	20
	미용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24.3.1~2028.2.29	100
					편입	2024.3.1~2026.2.28	100
	미용예술대학	코스메틱&뷰티테라피학과	채용조건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24.3.1~2028.2.29	25
	미용예술대학	헤어디자인학과	채용조건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24.3.1~2028.2.29	225
	소 계						500

2. 대학원(삭제 2022.10. 1)